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가단228732 판결 [주식매수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전상우

피 고 1. B 주식회사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평호, 채성욱, 정영원

변론 종결 2019. 4. 24.

판결 선고 2019.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2019.

3.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2009. 5. 26. 설립된 회사로 피고 C은 피고회사의 사실상 최대 주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9. 12. 20. 피고회사와 그 대표이사이던 D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피고 회사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당시 작성된 신주인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서')에 피고 C은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서는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26,667주를 주당 발행가 30,000원으로 유상증자하여 원고에게 발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그 제20조에는 투자금의 회수라는 제목으로 투자금 납입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해당기일 어느 때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 및 D에게 원고 소유 피고 회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 회사 및 D는 원고가 투자한 원금과 투자일로부터 회수일까지 연 5%의 이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2호에 피고 회사의 조업중단의 장기화를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9. 12. 24. 피고 회사에 신주인수대금 800,000,000원을 납입하고 피고회사 주식 26,667주를 취득하였고 2011. 8. 18. 피고 회사에 신주인수대금 600,000,000원을 납입하고 피고 회사 주식 13,676주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1. 8.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1. 5. 해임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3601호로 이 사건신주인수계약서 제20조 제2호에 따른 피고 회사의 조업중단의 장기화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매매대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후 확정되었다.

마.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C은 건강상의 이유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9. 6. 30.까지세무서에 휴업신고를 제출하고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주계약서 제20조 제2호에 조업중단의 장기화가 발생하였을 때 어느때라도 투자자는 투자기업 및 최대주주에게 그 주식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기업 및 최대주주는 투자한 원금과 투자일로부터 회수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조건이 발생한 이상 피고 회사와 그 보증인으로 실질적 최대주주인 피고 C은 투자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조업중단은 피고 C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고,조업중단이 발생한 것은 원고가 피고 회사가 보유한 특허 등을 탈취할 목적으로 별도회사를 설립하고 피고 회사의 사업을 방해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제20조 제2호의 조업중단은 어디까지나 그 조업중단이 피고들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주식의 매수를 통하여 주식회사의 자기자본으로 납입한 그 투자금을 주식회사로부터 반환받는 것은 영구히 존속하는 법인격을 전제로 주주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주식회사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여 엄격한 요건에 따라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사건 신주 인수계약 제20조 제2호가 어느 때라도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취지를 무제한으로 주식매수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신주 인수계약 제22조는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전쟁, 정부의 조치, 기타 계약 당사자가 지배할 수 없는 유사원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사건 인수계약 제20조의 다른 사유 특히 포괄규정인 제5호는 기타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 등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을 때로 규정하여 어디까지나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업중단의 장기화에 따른 주식매수 청구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의 조업 중단이 장기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장기화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사 설민수